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0170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0170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204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전영하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이상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영인

변론 종결2021. 7. 22.

판결 선고2021. 9. 1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204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면 "1. 기초사실"란의 2행 "2015. 8. 30."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김흥준

판사김우수

별지